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 안 번 호	

제출년월일 : 2009년 3월 일
제 출 자 : 성주군수

1. 개정이유

○ 지방공무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 수행을 위해 **의회전문요원**을 신설하여 의회의 기능을 보강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○ 별정직 공무원의 범위 확대

가. 의회 전문요원 신설(의회기능 보강)

3. 참고사항

가. 근거법령 : 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

나. 예산관련사항 : 해당없음

다. 기 타

1). 개정조례안 : 붙임

2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붙임

3) 입법예고 : 생략(「행정절차법」 제4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 해당)

성주군 조례 제 호

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성주군 지방별정직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 중 제2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.

21. 의회전문요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지정)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한다.	제3조(지방별정직공무원의지정) …… ……
1.~20(생략)	1.~20(현행과 같음)
〈신 설〉	21. 의회전문요원